

# “역시설 사용계약 기준 마련” 사업내역서

## □ 추진배경

- '14. 9월 철산위에서 이원화된 선로와 역사에 대한 사용체계를 “시설사용계약”으로 일원화하는 개편안 확정

개편 前(~'15)	개편 後('16~)
• (선 로) 선로 등 사용계약 • (운영시설) 국유재산 사용허가	• (선 로) 선로 사용계약 • (운영시설) 역사 등 운영시설 사용계약

- 사용체계 개편에 따라 정당한 역시설 사용료 및 합리적인 사용계약 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관리자의 역할 강화방안 추진

## □ 그간의 추진경과

- '14. 9.17. : 철도시설 관리 및 사용체계 개편방안 확정(국토부)
- '15. 6.~12월 : ‘역시설 사용계약 기준 마련 연구용역’ 추진  
\* (용역사) 한국교통연구원/삼일회계법인
- '16. 2.23. : 역사 등 운영시설(역시설) 사용계약 기준 마련
- '16.2.~7월 : 국토부·코레일·(주)SR과 사용계약(안) 협의
- '16. 7.22. : SR고속철도 역사 등 운영시설 사용계약 체결
- '16.8.~11월 : 국토부·코레일과 사용계약(안) 협의
- '16.11.29. : 2016년도 고속 및 일반철도 역사 등 운영시설 사용계약 체결
- '16.12.30. : 경강선 및 동해선 역사 등 운영시설 사용계약 체결
- '17. 3. 6. : SR고속철도 역사 등 운영시설 사용계약(변경) 체결

## □ 사용계약서 주요 내용

- (운영시설 분류 기준) 철도고객이 철도운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철도 운영자가 운송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 
\* '04년 “철도자산처리계획”의 시설·운영자산 구분과는 다른 분류체계

- (공간분류) 운영시설은 활용 용도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
  - 공공공간(PS) : 대합실, 화장실, 철도사법경찰대 등 국가차원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  - 영업공간(BS) : 역무실, 차량기지 등 운영자가 철도운송사업을 위해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시설
  - 상업공간(CS) : 판매점 등 부속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
  - 기타공간 : 광장, 주차장 등 그 밖의 시설

**<역사 등 운영시설>**

역사 시설			기타시설
공공공간 (Public Space)	영업공간 (Business Space)	상업공간 (Commercial Space)	기타공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합실</li> <li>• 복도, 계단, 통로</li> <li>• 철도사법경찰대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역무실</li> <li>• 지원실</li> <li>• 차량기지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판매시설(상점)</li> <li>• 임대회의실</li> </ul>	광 장 주차장

- (운영시설 부채) 고속철도 부채는 '16년말 기준 10,707억원
- 사용기간, 대상시설, 사용자 의무 등 사용조건, 사용료, 시설관리자의 역할 및 권한, 분쟁의 해결 등 명시(5년마다 갱신)
  - \* 경부·호남고속 및 일반철도는 2016년 단년도 계약('17년 단위사용체계 도입연계)
- 운영자의 운영시설 건설부채 부담 원칙 적용
- 운영자의 유지보수비용 부담 및 적정 유지보수 시행
- 재전대 등 행위 제한 및 위법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
- 사전승인을 통한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 유도
  - \* 상업시설 설치 전 사전협의 및 공간변경 시 사전승인 의무화

## □ 향후 계획

- '17년 하반기 : 고속 및 일반철도 역사시설 사용계약 변경체결('17~'21년)